

6.1.3 학생생활연구소규정

제정 1996. 06. 1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직제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초당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학생의 생활,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결과의 보급
2. 학생의 생활, 활동에 관한 전문적 지도와 상담
3.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계획
4. 학생생활에 관한 공개강좌 및 좌담회 개최
5. 기타 학생생활에 관련된 업무

제3조(소장)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조직과 임무) ① 연구소에 연구조사부, 생활지도부, 상담부, 행정실을 둔다.

- ② 각 부에 부장을 두되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조사부는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- ④ 생활지도부는 학생의 건전한 대학생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양교육 및 지도활동을 기획,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출판보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- ⑤ 상담부는 학생의 학업, 진로계획 및 적응문제에 관한 전문적 상담과 심리검사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5조(공개강좌) 연구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·결산 심의
2.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기타 연구소 운영의 중요사항

제8조(회의) ① 소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초 1월 이내에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집행)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소장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

한다.

제10조(경비) 본 연구소의 경비는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 및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